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협약서

2020. 9.

강 남 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주차장 운영 및 관리 협약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운영자”이라 한다)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이하 “소유주”이라 한다)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개방에 따른 협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 주차장 개요

- ▶ 주차장명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설주차장
-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삼성동 148-2 일대 주차장)
- ▶ 협약면수 : 30면이상(신청 접수 수요에 따라 협의하여 면수 조정)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유주”가 부설 주차장을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식으로 개방함으로써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무) ① “소유주”는 ~~약정기간~~  동안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방식으로 이용자에게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며 “소유주”의 사유로 인해 개방을 중단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이를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 선정, 요금징수, 부정주차자에 대한 견인조치 등 개방된 부설주차장 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유주”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운영시간 및 관리) ①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의 주차장 개방시간은 전일 및 야간개방으로 한다. 운영 중 기타 추가사항 (개방 시간 및 관리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경우 양 당사자가 사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전일 : 24시간
2. 야간(평일, 주말, 공휴일) : 19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② “소유주”는 이용자가 지정된 시간외 주차 시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이 체결되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② 협약 종료일 3개월 전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협약의 효력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 개방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및 징수는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에 따른다.

제6조(수입금 배분) “주차장”운영에 따른 전체 수입금의 40%는 “운영자”, 60%는 “소유주”의 수입금으로 하며, “운영자”는 주차장 수입금을 분기별로 결산하여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입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유주”에 지급한다.

제7조(주차장 이용권자) “소유주”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규칙에 따라 배정된 자에 한한다.

제8조 (민·형사상 관리 책임) “소유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소유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한 차량의 피해
2. 차량의 파손, 도난 및 차량내 귀중품의 도난
3. “이용자”의 과실 및 안전사고에 의한 피해
4. 약정시간 외 주차로 인해 견인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 및 비용

제9조(협약의 변경·해지) 본 협약은 제4조(협약기간)의 규정에 따라 기간 만료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변경·해지할 수 있다.

1. 소유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주차시설의 증·개축 등 주차장 시설 관리·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2. 소유주가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주차장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3. 양 당사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양 당사자가 변경 또는 해지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경우

제10조(보조금 반환) 제9조의 사유가 아닌 “소유주” 일방의 이유로 부설주차장 개방을 중단할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으며, 보조금도 즉시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 등)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본 협약의 효력은 소유주와 “운영자”가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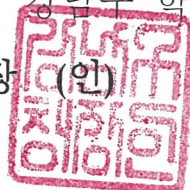
③ 본 협약조항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운영자”, “소유주” 쌍방은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고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2020년 9월 9일

협약자 (운영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강남구청장 (인)



(소유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7(삼성동)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장 (인)

